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LIFELONG LEARNING CENTER OF SAHMYOOK UNIVERSITY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배움의 장소! 삼육대학교!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위신청 · 자격증신청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및 자격증 신청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회원가입** (상시)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매년 1·4·7·10월)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신청** (매년 1·4·7·10월)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4. (해당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신청** (매년 6/15~7/14, 12/15~1/15)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5. (해당자) **학위증 발급** (매년 2·8월 말) '학위대상자'만 해당
(<https://www.cb.or.kr/> 문의 : 1600-0400)



6. (해당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1년에 4회, 해당기간에만 가능[1,4,7,10월]
 학위신청 = 1년에 2회[12월 중순 ~ 1월 중순] [6월 중순 ~ 7월 중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http://cb.or.kr>)

문의 : 1600-0400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 • +

1. 회원가입

학점은행제 소개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증명서 신청

학습지원

알림마당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인정 대상
 제도이용 주의사항
 제도활용 안내
 연혁
 관련법규정
 현황통계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표준교육과정 조회
 교육훈련기관 조회
 개설 예정과목
 일시중단 학습과정

신청안내
 제출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재심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학위신청 안내
 학위수여 요건
 학위신청 및 취소

증명서 종류
 증명서 발급
 증명서 원본대조
 학위증 우편신청

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일반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학점인정 표준DB

공지사항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신문고

2~3.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4. 학위신청('학위대상자'만 해당)

학습자 관련

기관 관련

고시·규정 개정

+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2019.09.04

2019년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 2019.09.03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금금해요」 2019.09.03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2019.08.22

온라인 증명서 발급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증명서 원본 대조

로그인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1년에 4회, 해당기간에만 가능[1,4,7,10월]
학위신청 = 1년에 2회[12월 중순 ~ 1월 중순] [6월 중순 ~ 7월 중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http://cb.or.kr>)

문의 : 1600-0400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사이트맵 | ENGLISH

학점은행제 소개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증명서 신청

학습지원

알림마당

학점인정 신청

신청안내 >

제출서류 안내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학위연계 신청 >

재심신청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학점인정 신청

학점원 소개

학점은행제에서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목을
의미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전문대학(제적 및 졸업) 및 4년제 대
학교(제적)에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등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
하게 하는 제도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
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며, 학위대상자는 학위
신청(교육부장관학위)까지 진행**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하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http://cb.or.kr>)

문의 : 1600-04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 ENGLISH



학점은행제 소개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증명서 신청

학습지원

알림마당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학점인정 대상
제도이용 주의사항
제도활용 안내
연혁
관련법규정
현황통계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표준교육과정 조회
교육훈련기관 조회
개설 예정과목
일시중단 학습과정

신청안내
제출서류 안내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재심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학위신청 안내
학위수여 요건
학위신청 및 취소

증명서 종류
증명서 발급
증명서 원본대조
학위증 우편신청

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일반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학점인정 표준DB

공지사항
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신문고



학습자 관련

기관 관련

고시·규정 개정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2019.09.04
2019년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사... 2019.09.03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금금해요」 2019.09.03
2019년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2019.08.22

온라인 증명서 발급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발급

증명서 원본 대조

로그인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1년에 4회, 해당기간에만 가능[1,4,7,10월]
학위신청 = 1년에 2회[12월 중순 ~ 1월 중순] [6월 중순 ~ 7월 중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http://cb.or.kr>) 문의 : 1600-0400

‘학위예정자’ 분들은 **‘학위신청’ 100일 전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학위신청을 하
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자등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학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자격증신청이 어렵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위 학점인정신청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cb.or.kr)에서 **성적증명서 출력이 가**
능한 시점부터 자격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교과목 종료 후 학점인정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년 6월15일 ~ 7월14일, 12월15일~1월14일 이외에는 학위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재 교육중인 실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종강 후,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학위신청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 1년에 4회, 해당기간에만 가능[1,4,7,10월]
학위신청 = 1년에 2회[12월 중순 ~ 1월 중순] [6월 중순 ~ 7월 중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http://cb.or.kr>) 문의 : 1600-0400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확인 여부는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http://cb.or.kr>)
2. 전화문의 (1600-0400) →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평생교육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연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자격증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해당자) 학위발급 후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http://lic.welfare.net>)
2. 전화문의 02)786-0845 →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평생교육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연결을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증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직접 작성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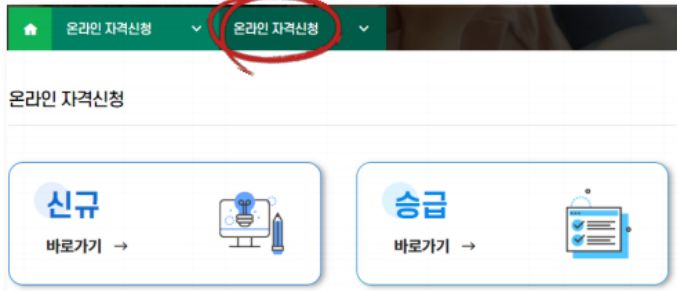
기존 신청방법은 6월 24일(금) 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에서

※ 6월 22일(수), 2차 홍보를 통해 관련 세부 사항이 안내 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온라인 자격신청 - 온라인 자격신청



 **온라인으로 입력한**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가까운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 6월 22일(수), 2차 홍보를 통해 관련 세부 사항이 안내 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 2 / 2 > ||



익스플로러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오니 크롬, 엣지, 웨일,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동안 팝업 열지 않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증명서 발급

열린광장

로그인 · 화면크기 + - ☰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
자격관리센터 입니다.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



자격증 신청방법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이수과목 안내

클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

영역별사회복지사자격

증명서 발급

열린광장

로그인 · 화면크기 +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제출서류
확인하기

자격증 신청절차

① 아래의 방법은 2022년 6월 24일(금)까지만 적용합니다.

①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발송 하시길 바랍니다.

01
신청자

발급신청

02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전국 17개)

접수

0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사, 자격증발급

접수처 확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①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②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4.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치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세부내용보기](#)

- 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 ①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양성교육수료자 ▼

경력승급자 ▼

외국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①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 2 / 2 > ||



익스플로러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오니 크롬, 엣지, 웨일,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동안 팝업 열지 않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증명서 발급

열린광장

로그인 · 화면크기 + -



클릭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



자격증 신청방법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이수과목 안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
자격관리센터 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

영역별사회복지사자격

증명서 발급

열린광장

로그인 · 회원가입

온라인 자격신청

온라인 자격신청

온라인 자격신청

온라인 자격신청

① 정확한 입력을 위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자격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자격신청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소속협회로 서류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온라인 자격신청을 위해 브라우저의 '팝업 허용' 설정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 60번 참고)
※ 익스플로러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오니 크롬, 엣지, 웨일 등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바로가기 →

승급

바로가기 →

재발급

바로가기 →

원활한 자격신청을 위해 아래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와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1 부를 제출해야 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실명인증

주민번호

☐ 외국인 여부

이름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아래 결격사유 각 호의 내용을 확인 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하지 않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해당하지 않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해당하지 않음
-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해당하지 않음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하지 않음

☐ 만일 자격취득 이후 결격사유 해당자가 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① 위 결격사유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786-0845)

☐ 본인은 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 해당자가 아닙니다.

인증하기

취소하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신청정보

*신청등급 ?

선택

신청종류

신규

*신청협회

검색

기본정보

사진등록
(3.5X4.5)

찾아보기 ?

*성명

최영은

영문이름

☐ 외국인여부

*주민번호

950108

-

*휴대폰

010-4791-5032

*이메일 ?

이메일 앞자리

@

이메일 뒷자리

직접입력

★ 신청자가 직접 등록한 위 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우편발송 시 사진 동봉할 필요 없습니다.

☐ 앞의 사진 제출 불필요 안내글 확인했습니다.

★ 사진 등록 시 정수리 찢림 또는 한쪽으로 치우침 등이 있을 경우 사진등록 창에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크기가 정해진 규격(3.5*4.5)보다 작거나 해상도가 낮을 경우 사진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사진의 낮은 인쇄 품질로 인해 신청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수령방법

*집주소

우편번호

주소

주소검색

집주소 초기화

상세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우편번호

주소

주소검색

직장주소 초기화

상세주소

*수령 ?

☐ 집주소 ☐ 직장주소 ☐ 직접수령(한국사회복지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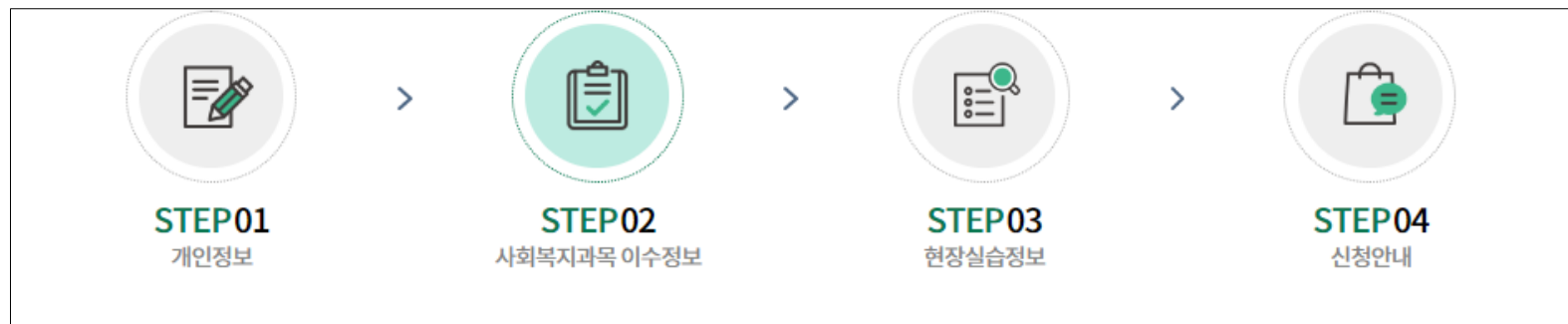
이전

다음

임시저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최종학력

➔ 입력하신 내용과 추후 제출하신 서류는 동일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출신학교 기재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이수기관)

*최종학력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학교명	*학과명	*입학일	*졸업일
검색	검색	캘린더	캘린더

※ 학교명과 학과명 입력 시 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이수정보

☐ 나는 2019.12.31.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했습니다.

필수과목

☐	연번	교과목명	교육기관 구분	학교 및 교육기관	삭제/취소
☐	1		평가인정 학습과정		취소

☒ 동일교육기관 이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STEP01

개인정보



STEP02

사회복지과목 이수정보



STEP03

현장실습정보



STEP04

신청안내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시작일

☐ 2019.12.31. 이전 ☐ 2020.1.1. 이후

★ 기관실습 시작일이 아닌,
교육기관 수업 시작일

★ ※'2019.12.31.이전'을 클릭한 신청자는 아래 기간, 실습기관, 지도자/교수란을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기간

★ (직접+간접실습)

시작일 종료일

실습기관

관리번호 실습기관

지도자/교수

실습기관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총 실습시간

★ (직접+간접실습)

직접입력



시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하단에 전자서명 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미동의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이전

신청완료

임시저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온라인 자격신청 ① 정확한 입력을 위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온라인 자격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자격신청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소속협회로 서류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1

개인정보



STEP02

사회복지과목 이수정보



STEP03

현장실습정보



STEP04

신청안내

서류 제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접수 진행 단계를 최종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증 접수처(계좌)로 구비서류(수수료)를 보내셔야 합니다.

→ 경기사회복지사협회

☎ TEL : 031)252-7554

☎ FAX : 031)257-3323

📍 주소 :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피아 B동 406호

🏠 계좌 : 국민 877001-01-444745 /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홈페이지 : kg.welfare.net

✉ 대표메일 : kgasw@hanmail.net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뒤 접수 절차

➡ (접수 준비) 온라인으로 입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하십시오. 수수료는 우편물에 동봉치 마시고 계좌이체 하십시오.

○ 신청협회로 등기우편 발송할 서류 목록

0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온라인 입력한 뒤 출력한 문서)

① '신청서' 작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일정 기한 유지 뒤 삭제(약 6개월마다) 될 수 있습니다.

02 각종 구비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등)

① 각종 구비서류 구제 목록은 신청한 등급과 요건마다 다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신청협회로 계좌이체할 금액

01 총 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① 신청협회마다 입금 계좌가 다릅니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하단 왼쪽 "자격증 접수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은 신청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02 입금자명은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표시

① 성명만 표시하여 입금한 경우 신청협회로 연락하십시오.

➡ (서류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서류 제출 전 원본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하십시오.

○ 제출 서류 사본 여부 확인

-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 제출 서류 유효기간 확인

-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유효기간"(통상 "90일 이내")이 명시돼 있는 경우, 명시 기한 내에 접수한 서류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① 유효기간 확인 없이 심사 가능한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외국대학 졸업증명서(원본만)>,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만)>

① 유효기간이 통상 90일인 서류: 온라인으로 발급한 서류

① 유효기간이 통상 6개월인 서류: 오프라인으로 발급한 서류

➡ (심사 절차 확인 방법) 심사 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상태, 심사 상황 확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로그인(개인아이디) →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자격신청 조회' 선택 → 자격 심사 진행 과정 확인

① 최종 합격시 '자격신청 조회' 메뉴 '비고'란에서 자격번호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번호 형태는 등급별로 '1-00-.....' 또는 '2-00-.....'로 부여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 (자격증명서 안내) '자격증명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자격증명서'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로그인(개인아이디)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증명서출력' 선택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 및 '결제 후 출력하기' 버튼 클릭 → 수수료 결제 (결제 실패시, 결제 버튼 하단 '팝업차단 해제하는 방법' 참고) → 저장 및 출력

① 결제 버튼은 한 번만 누른 뒤 잠시 기다리십시오. 결제 중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에 따라 중복결제 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1회당 2,000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뒤에도 허위 및 부정한 방식으로 자격 발급 요건(실습, 교과목, 학위 등) 취득 사실 확인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소자는 동법동조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으며,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였습니까? ☐ 확인

입력정보 확인 및 수정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자격신청 조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http://lic.welfare.net>) 문의 : 02)786-0845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 자격증신청관련 문의사항 : 02)786-0845